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박채아 의원 외 22명)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채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6
----------	-----

발의연월일 : 2018. 11.

발 의 자 : 박채아 · 김준열 · 김득환 ·
김시환 · 김진욱 · 조주홍 ·
박용선 · 황병직 · 안희영 ·
도기욱 · 박미경 · 배진석 ·
정세현 · 김영선 · 박차양 ·
이선희 · 박관수 · 임무석 ·
한창화 · 신호광 · 방유봉 ·
윤승오 · 윤창욱 의원
(23명)

찬 성 자 : 최병준 · 김명호 의원
(2명)

1. 개정이유

- 산림복지혜택 확대를 위한 시설사용료 면제·감면대상자 추가
- 안동호반 자연휴양림 시설확충에 따라 숙박시설 사용료 및 각종 체험료 등의 징수기준 마련
- 이용객 예약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가 직접 예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민’, ‘장애인’, ‘다자녀가정’,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숙박시설 외 시설도 사전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 및 협약을 맺은 기관 등이 사전예약을 하고자 할 때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접 예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 다. 면제·감면대상 확대 및 추가 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 기준 마련(안 제8조, 별표 2)
- 라. 별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체험료 등은 관리·운영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

3.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련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의5

6. 관련부서 협의

-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법제심사 : 의견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의견없음
- 해당부서 검토의견 : 의견없음

7. 참고사항 :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는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란 당해 자연휴양림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소장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탁받은 위탁사업자를 말한다.
3. “경로자”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4. “단체”란 20명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5. “경상북도민”이란 주민등록표상 경상북도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7. “다자녀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미혼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8.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9. “성수기”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가. 매년 7월 1일 ~ 8월 31일까지의 기간

나. 금요일, 토요일

다. 공휴일 전일(前日), 이 경우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라. 그 밖에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가 지정하는 기간

10.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11. “할매·할배의 날 주간”이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이 속한 주의 월요일 ~ 목요일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별표 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징수한다.”를 “징수하거나 시설 사전 예약으로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설의 사전 예약은 사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료는 예약 후 1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 예약이나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등의 예약으로서 관리·운영자가 직접 예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관리·운영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 중 “숙박시설을”을 “시설을 사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숙박시설을”을 “시설을 사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예약율”을 “관리·운영자는 예약율”로, “관리·운영자는 3일”을 “3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도내 산림생태·문화·관광 홍보”를
“산림생태교육, 문화행사, 관광 홍보 및 투자유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시군”을 “시·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경상북도민

제8조제2항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

6. 다자녀가정

7. 국가보훈대상자

제8조제3항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한다.

제15조 중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시설사용료”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중전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요 금 (원)	비고
시 설 사 용 료	캠핑장	야영데크	1일/1데크	10,000	
		카라반 18㎡~22㎡	1일/1대	120,000	
	숙박 시설	18㎡ 미만	1일 / 1동실	40,000	
		18㎡ 이상 28㎡ 미만	〃	50,000	
		28㎡ 이상 41㎡ 미만	〃	60,000	
		41㎡ 이상 51㎡ 미만	〃	80,000	
		51㎡ 이상 61㎡ 미만	〃	90,000	
		61㎡ 이상 71㎡ 미만	〃	100,000	
		71㎡ 이상 81㎡ 미만	〃	120,000	
		81㎡ 이상 111㎡ 미만	〃	150,000	
		111㎡ 이상 121㎡ 미만	〃	200,000	
		121㎡ 이상 131㎡ 미만	〃	220,000	
		131㎡ 이상 141㎡ 미만	〃	240,000	
		141㎡ 이상 161㎡ 미만	〃	280,000	
		161㎡ 이상	〃	360,000	
	☐ 비고 ※ 이 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 밖의 시설사용료 및 프로그램 체험료 등은 시설구조 및 이용정도를 감안하여 관리·운영자가 별도로 정한다. ※ 시설사용료에는 주차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만차시 일반 관람객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별표 2】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제8조제2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비고
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 단체	50%	비수기에 한함, 일부시설 제외
할매·할배의 날 주간에 방문하는 경로자		
경상북도민		
장애인		
다자녀가정		
국가보훈대상자		
☐ 비고 ※ 감면대상자를 동반한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시설사용료 감면은 비수기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성수기 및 휴관일을 제외한 기간에 한한다. ※ 감면이 중복될 경우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 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감면기간에 대하여 휴양림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의 경우 협약조건에 따른다. ※ 관리·운영자는 시설·관리운영 비용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 :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는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는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 : 당해 자연휴양림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소장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탁받은 위탁사업자를 말한다.	2.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란 당해 자연휴양림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소장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탁받은 위탁사업자를 말한다.
3. 숙박시설 : 자연휴양림 시설 중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등 이용객들이 잠을 자거나 휴양을 취할 수 있는 집을 말한다.	3. “경로자”란 만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4. 경로자 :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4. “단체”란 20명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5. 단체 : 20명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5. “경상북도민”이란 주민등록표상 경상북도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7. “성수기”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7. “다자녀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미혼인 자녀를 3명이상 둔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가. 매년 7월 1일~8월 31일까지의 기간 나. <u>금요일, 토요일</u> 다. <u>공휴일 전일(前日), 이 경우 공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말한 다.</u> 라. <u>그 밖에 자연휴양림 관리·운 영자가 지정하는 기간</u> 8.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9. “할매·할배의 날 주간”이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이 속한 주의 월요일~목요일을 말한다.	8.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국가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 한다. 9. “성수기”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가. 매년 7월 1일~8월 31일까지의 기간 나. <u>금요일, 토요일</u> 다. <u>공휴일 전일(前日), 이 경우 공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말한다.</u> 라. <u>그 밖에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자가 지정하는 기간</u> 10.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11. “할매·할배의 날 주간”이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이 속한 주의 월요일~목요일을 말한다.
제4조(시설사용료) ① 자연휴양림 시 설사용료(이하 “시설사용료”이라 고 한다)는 “ <u>별표</u> ”와 같다.	제4조(시설사용료) ① ----- ----- ----- “ <u>별표 1</u> ”과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5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예약) ①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시설 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 만, 숙박시설은 사전 예약으로 시 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숙박시설의 사전 예약은 사용 예정일 30일전부터 예약할 수 있 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예약 후 1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숙박시설을 예약할 경우 시설 사용료는 현금(「증권에 의한 세 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 조제1항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무통장 입금 및 인터넷·폰 뱅킹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생략)	제5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예약) ① ----- -----징수하거나 시 설 사전 예약으로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 시설의 사전 예약은 사용예정 일 전월 1일부터 예약할 수 있으 며, 시설사용료는 예약 후 1일 이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 예약이나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등의 예약으로서 관리 ·운영자가 직접 예약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관리· 운영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설을 사전 ----- -----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분쟁 해결) ① 자연휴양림 관 리기관 또는 숙박시설을 예약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약취소	제6조(분쟁 해결) ① ----- ----- 시설을 사전 ----- -----

현행	개정안
가 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예약을</u> 취소하거나 시설사용료를 잘못 입금한 자에게 <u>관리·운영자는 3일</u> 이내(토요일과 공휴일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u>관리·운영자는</u> <u>예약을</u> ----- ----- <u>3일</u>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경상북도지사가 <u>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도내 산림생태·문화·관광 홍보</u>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 <u>산림생태교육, 문화행사, 관광 홍보 및 투자유치</u> -----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 -----.

현행	개정안
1. 도 및 <u>시군</u>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단체 2. (생략) 3. <u>지역주민</u> 4.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5. (생략) ③ 제2항의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u>별표</u>와 같다. 제10조(시설사용 제한 및 휴관일 지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② ~ ④ (생략) 제15조(준용규정) <u>입장료 및 시설사용료</u>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1. ---- <u>시·군</u> ----- ----- 2. (현행과 같음) 3. <u>경상북도민</u> 4. (현행과 같음) 5. <u>장애인</u> 6. <u>다자녀가정</u> 7. <u>국가보훈대상자</u> 8.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 ----- <u>별표 2</u>-----. 제10조(시설사용 제한 및 휴관일 지정) ① ----- ----- -----. 2. (현행 제1호와 같음) 1. (현행 제2호와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준용규정) <u>시설사용료</u> ----- ----- ----- -----.

현행

【별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요 금(원)		비 고
				개 인	단 체	
시설 사용료	캠핑장	야영장	1일/ 1개소	5,000		
		야영데크	〃	10,000		
		오토캠핑장	〃	15,000		
		카라반	1일/1대	18㎡미만	100,000	
				18㎡~22㎡	120,000	
	숙박 시설	18㎡ 미만(3인 이하)	1일/ 1동실	40,000		
		18㎡ 이상 28㎡ 미만(4인 이하)	〃	50,000		
		28㎡ 이상 41㎡ 미만(6인 이하)	〃	60,000		
		41㎡ 이상 51㎡ 미만(8인 이하)	〃	80,000		
		51㎡ 이상 61㎡ 미만(10인 이하)	〃	90,000		
		61㎡ 이상 71㎡ 미만(12인 이하)	〃	100,000		
		71㎡ 이상 81㎡ 미만(14인 이하)	〃	120,000		
		81㎡ 이상(15인 이상)	〃	150,000		
	감면대상			감면율	비고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 단체		50%	비수기에 한함	
		할매·할배의 날 주간에 방문하는 경로자 및 경로자를 동반한 자				
		지역주민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의 경우 칠곡군민, 안동호반 자연휴양림의 경우 안동시민)				

- ※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 시설사용료 감면은 비수기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성수기 및 휴관일을 제외한 기간에 한한다.
- ※ 감면이 중복시에는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 ※ 단, 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감면기간에 대하여 휴양림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의 경우 협약조건에 따른다.

개정안

【별표 1】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요 금(원)	비고
시설 사용료	캠핑장	야영데크	1일/1데크	10,000	
		카라반	18㎡~22㎡	1일/1대	120,000
	숙박 시설	18㎡ 미만	1일/1동실	40,000	
		18㎡ 이상 28㎡ 미만	〃	50,000	
		28㎡ 이상 41㎡ 미만	〃	60,000	
		41㎡ 이상 51㎡ 미만	〃	80,000	
		51㎡ 이상 61㎡ 미만	〃	90,000	
		61㎡ 이상 71㎡ 미만	〃	100,000	
		71㎡ 이상 81㎡ 미만	〃	120,000	
		81㎡ 이상 111㎡ 미만	〃	150,000	
		111㎡ 이상 121㎡ 미만	〃	200,000	
		121㎡ 이상 131㎡ 미만	〃	220,000	
		131㎡ 이상 141㎡ 미만	〃	240,000	
		141㎡ 이상 161㎡ 미만	〃	280,000	
		161㎡ 이상	〃	360,000	

□ 비고

※ 이 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 밖의 시설사용료 및 프로그램 체험료 등은 시설구조 및 이용정도를 감안하여 관리·운영자가 별도로 정한다.

※ 시설사용료에는 주차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만차시 일반 관람객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별표 2】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제8조제2항 관련)

감면대상	감면율	비고
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 단체	50%	비수기에 한함, 일부시설 제외
할매·할배의 날 주간에 방문하는 경로자		
경상북도민		
장애인		
다자녀가정		
국가보훈대상자		

□ 비고

※ 감면대상자를 동반한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시설사용료 감면은 비수기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성수기 및 휴관일을 제외한 기간에 한한다.

※ 감면이 중복될 경우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 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감면기간에 대하여 휴양림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의 경우 협약조건에 따른다.

※ 관리·운영자는 시설·관리운영 비용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관련법령 발췌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자연휴양림의 조성) ①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3.17., 2013.3.23., 2016.12.27.>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휴양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3조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 2016.12.27.>

⑤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0.]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법제담당)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규제혁신담당)

○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 치 법 규 명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 가 담 당	감사관실	직 급 성 명	행정7급 김 덕 환
입 안 주 무 부 서	정책기획관	통 보 (조 치) 일	2018. 10. 26.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부패 유발요인 없음.		

평 가 항 목 별 검 토 자 료

□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크리스트 (종합)

평가분야	평가항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준수	준수부담의 적정성	X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높음	
	제재규정의 적정성	X	① 적당	해당없음
			② 약함	
			③ 강함	
	특혜발생 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X	① 구체적·객관적	해당없음
			② 추상적·주관적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X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부적정	
	재정누수 가능성	X	① 명확	해당없음
			② 불명확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	X	① 있음	해당없음
			② 없음	
	공 개 성	X	① 예측가능	해당없음.
			② 예측곤란	
	예측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4 해당부서 검토의견 (산림산업과)

실·과	검 토 의 견
산림산업과	○ 의견 없음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 산림산업과 지방녹지주사보 백명희 (054-880-3632)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명	서명	비고
박 채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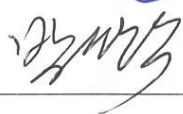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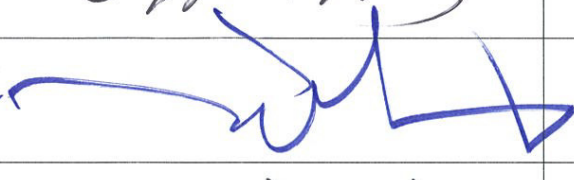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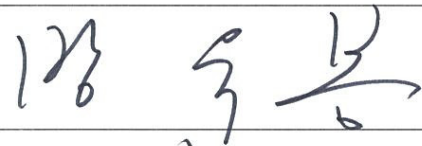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명	서명	비고
김 준영	김준영	
김 득환	김득환	
김 시환	김시환	
김 진욱	김진욱	
조 규홍	조규홍	
박 동진	박동진	
행 배익	행배익	
안 지영	안지영	
노 기욱	노기욱	
박 미경	박미경	
배 진석	배진석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명	서명	비고
강 세 현		
김 영 선		
백 차 영		
이 선 희		
박 판 수		
김 무 석		
한 감 행		
신 은 하		
장 수 봉		
이 국 세		
조 창 호		

찬성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명	서명	비고
최 병 권	최 병 권	
김 병 호	김 병 호	